

<p>⑥ 제1항의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7조(전시·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p>		
<p>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p> <p>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의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p> <p>2.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p> <p>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p> <p>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p> <p>②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p> <p>1. 제1항의 국내외 학술대회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정한다.</p> <p>2.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p>	<p>제6조 (학술대회 참가지원)</p> <p>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제1항의 보건의료인이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원이 행해짐으로써 중복지원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규약 제9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학술대회 주최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개최 90일전에 협회에 첨부양식(별표 9)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 개최 60일전까지 협회에 첨부양식(별표 8)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을 통해 참가자를 지원한다.</p> <p>④ 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학술대회 주최자측로부터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정산내역서를 받아 검토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협회로 납부하도록 하여 학술대회 주최자측에게 전달한다.</p>	

<p>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인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되고, 보건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5. 사업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학술대회의 주최자,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학술대회의 주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협회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과 용도만을 지정할 수 있을 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 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제,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3. 경비 지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금액기준은 'VAT포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기준에서 동일 적용).</p> <p>1.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p> <p>2. 등록비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p> <p>3. 식대는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 단, 현금결제 시 사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4.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p> <p>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p>	
--	---	--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1. 신청사

회 사 명		문서번호	
주 소		우편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팩 스	
이 메 일		핸 드 폰	

2. 지원내용

학술대회			
주관단체			
개최장소	(개최국)	(도시)	
개최일자		지원자수	명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세부운용기준」 제6조에 따른 학회 참가자 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귀중

※ 작성 및 제출방법

1. 「신청사」의 문서번호는 회사에서 부여되는 공문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미기재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의 「학술대회」는 정식 학술대회 명칭, 「개최장소」는 개최국 및 도시, 「지원자수」는 기입합니다.
3.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제출 시 구비서류 하드카피 1부를 우리협회 기획홍보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이메일(fairtrade@kmdia.or.kr)을 이용하여 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술대회 종료 후 협회에서 지원금을 실비정산하여 신청사에 통지하며, 신청사는 지원금액 및 지원금액의 1.5%(100원 이하 절삭)에 해당하는 수수료(VAT 별도)와 함께 협회로 납부합니다.

접수처 : (137-884)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75-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층 기획홍보팀
문 의 : 02-596-0847

학술대회 참가지원 요청서

1. 주관학회

주관학회명		문서번호	
위임학회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팩 스		
이 메 일	핸 드 폰		

2. 학술대회 내용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	(총 일)	
참가지원	총 명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명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발표자 명	<input type="checkbox"/> 좌장 명 <input type="checkbox"/> 토론자 명
개최장소	(개최국)	(도시)	
구비서류	1.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2. 학술대회 참가예산(안) 1부 3. 해외학회 시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국제학회 증빙서류 1부 4. 위임받은 학회 입증서류 1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세부운용기준」 제6조에 따른 학회 참가자 지원 요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귀중

※ 작성 및 제출방법

1. 「주관단체」의 문서번호는 주최학회(위임학회)에서 부여되는 공문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미기재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2. 「학술대회」는 정식 학술대회 명칭, 「개최장소」는 개최국 및 도시를 기입합니다.
3.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까지 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제출 시 구비서류 하드카피 1부를 우리협회 기획홍보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이메일(fairtrade@kmdia.or.kr)을 이용하여 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회주최자 또는 위임받은 학회는 학술대회가 완료된 후 30일 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에 대한 모든 지원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137-884)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75-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층 기획홍보팀
문 의 : 02-596-0847